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은 더욱 정리된 모습을 갖추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권이 인정됨으로써 중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높이게 됐다. 물론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상황에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고 반론권 제도가 도입된 정치적, 역사적 성격은 분명 지적돼야 하겠지만 반론권 제도 자체는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론권은 본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특정 사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 등 이해관계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박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 이미 행해졌던 사실보도에 대하여 무료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정간물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반대 진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중재절차와 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언론을 상대로 동일한 매체 영향력을 이용케 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실질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한편 반론권이 법제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 내지 편집권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반론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언론에게는 편집권의 독립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을 무료로 지면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로서 편집권과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권은 전적으로 언론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언론이 전문적인 관행과 판단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독립적인 기능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집권이다. 그런데 반론권이 제도화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언론의 편집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1974)’ 사건에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는데, 신문의 편집권이 반론권보다 우선이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판례에 따라 미국에서 반론권 제도는 신문에 대하여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전적인 언론자유의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론권이 편집권을 위협해서는 언론자유가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편집권과의 충돌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의 하나이다. 언론의 입장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 정작 다루어야 할 사회적 쟁점을 다루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FCC가 방송 반론권의 대표적인 제도였던 Fairness Doctrine을 포기한 것도 그런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방송국들은 Fairness Doctrine에 입각하여 복잡한 쟁점을 적극 다루기보다는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해 아예 보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반론권의 제도화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5. 언론보도의 현실과 대응

1990년대부터 반론청구 및 언론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의 보도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예컨대 마감시간에 따른 불충분한 사실 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 특종의식과 속보 등 무리한 취재경쟁, 상업주의적 경쟁에 따른 선정적 보도, 출입처취재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른 발표저널리즘, 기자 개인의 전문지식 및 경험 부족과 윤리의식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들을 들 수 있다.